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10호 2013. 12. 18. (수)

##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3 - 102호 정선(신동) 군관리계획(교통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
- 정선군고시 제2013 - 109호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고시 ..... 5
- 정선군고시 제2013 - 110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6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3-842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7
- 정선군 공고 제2013-843호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0
- 정선군공고 제2013 -853호 정선군 계획위원회 위원후보 등록공고 ..... 2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3 - 102호

**정선(신동) 군관리계획(교통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신동)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주차장,철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9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신동읍 조동리 함백선 예미 ~ 함백 구간내 조동 철도건널목 개선사업을 통해 차량 및 철도의 원활한 소통 유발 및 보행자의 철도건널목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선(신동)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주차장,철도) 결정(변경) 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84-28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라. 정선(신동)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주차장,철도)결정(변경) : 별첨조서 참조

마. 정선(신동)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주차장,철도)결정(변경)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신동) 군관리계획(교통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해당없음)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 도로	5,630	중로 2-1 에미리 752-1철	소로 2-8 조동리 2-2도	일반 도로	함백종합 고교	강고2652호 (74.4.9)	
변경	중로	2	2	15	보조간선 도로	5,624	중로 2-1 에미리 752-1철	소로 2-8 조동리 2-2도	일반 도로	함백종합 고교	강고2652호 (74.4.9)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442	중로 2-2 조동리 284-22답	주거지역내 조동리 268대	일반 도로	-	강고2652호 (74.4.9)	
변경	소로	3	17	6	국지 도로	442	중로 2-2 조동리 284-22답	주거지역내 조동리 268대	일반 도로	-	강고2652호 (74.4.9)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중로 2-2	중로 2-2	°노선변경 - L=5,630m → 5,624m ( 감) 6m )	° 신동읍 조동리 조동 철도건널목 개선사업에 따른 노선변경
2	소로 3-17	소로 3-17	°노선변경 - 가각부 변경	° 중로2-2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도로모퉁이변 변경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동읍 조동리 283-6답 일원	2,740	감)132	2,608	정선고 제27호 (02.5.16)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노외주차장	°면적축소 - A=2,740㎡ → 2,608㎡ ( 감) 132㎡ )	°신동읍 조동리 조동 철도건널목 개선사업에 따른 면적 축소

3)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기점	중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함백선	일반 철도	신동읍 예미리 246-2철 일원	신동읍 방재리 244-13철 일원	① 함백역 (A=3,653m <sup>2</sup> )	9,489	-	9,489	68,866	감)65	68,801	강원고 제228호 (10.7.23)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②	함백선 일반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축소 - A=68,866m<sup>2</sup> → 68,801m<sup>2</sup> 감) 65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동읍 조동리 조동 철도건널목 개선사업에 따른 면적 축소</li> </ul>

정선군고시 제2013 - 109호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고시

정선군의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이 제209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85,040,167	100.00%	283,998,171	100.00%	1,041,996	0.37%
일반회계	260,666,568	91.45%	259,632,725	91.42%	1,033,843	0.40%
특별회계	24,373,599	8.55%	24,365,446	8.58%	8,153	0.03%
공기업특별회계	8,730,130	3.06%	9,117,755	3.21%	△387,625	△4.2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30,130	3.06%	9,117,755	3.21%	△387,625	△4.25%
기타특별회계	15,643,469	5.49%	15,247,691	5.37%	395,778	2.60%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1,470,310	0.52%	4,466,473	1.57%	△2,996,163	△67.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7,451	0.22%	630,449	0.22%	△2,998	△0.48%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91,000	0.03%	161,000	0.06%	△70,000	△43.48%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26,303	0.04%	133,137	0.05%	△6,834	△5.13%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7,488	0.13%	339,224	0.12%	18,264	5.38%
주택사업특별회계	333,159	0.12%	94,715	0.03%	238,444	251.75%
주차장특별회계	264,000	0.09%	263,000	0.09%	1,000	0.38%
수질개선특별회계	12,373,758	4.34%	9,159,693	3.23%	3,214,065	35.09%

정선군 고시 제2013 - 110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정선군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제209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54,164,436	100.00%	333,093,536	100.00%	21,070,900	6.33%
일반회계	325,187,599	91.82%	304,744,892	91.49%	20,442,707	6.71%
특별회계	28,976,837	8.18%	28,348,644	8.51%	628,193	2.22%
공기업특별회계	9,528,266	2.69%	9,300,180	2.79%	228,086	2.4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28,266	2.69%	9,300,180	2.79%	228,086	2.45%
기타특별회계	19,448,571	5.49%	19,048,464	5.72%	400,107	2.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5,806	0.18%	631,306	0.19%	4,500	0.71%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4,842,204	1.37%	4,842,204	1.45%	0	0.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79,840	0.05%	179,840	0.05%	0	0.0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33,397	0.04%	133,397	0.04%	0	0.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39,994	0.10%	339,994	0.10%	0	0.00%
주택사업특별회계	250,648	0.07%	250,648	0.08%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45,555	0.18%	645,555	0.19%	0	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2,421,127	3.51%	12,025,520	3.61%	395,607	3.29%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3-842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강원도 고시 제2002-77(2002.4.8.)호로 결정 고시된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14번지 일원
3.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⑨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62-14대 일원	44,736	증)3,973	48,709	강고제77호 (02.4.8)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736	증)3,973	48,709	100.0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42,382	-	42,382	787.0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2,534	증)3,973	6,327	13.0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증감 사항은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변경 사항임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결정(변경)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7	1,079	2	71	4	954	2	54
	변경	8	1,110	2	71	4	954	2	85
중로	기정	2	660	1	18	1	642	-	-
	변경	2	660	1	18	1	642	-	-
소로	기정	5	419	1	53	3	312	2	54
	변경	6	450	1	53	3	312	2	85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28	6	국지 도로	74 (31)	중로 2-7 고한리 97-4철	고한역 고한리 97-55철	일반 도로	-	정선고제29호 (2002.5.16)	일부 편입

※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3)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⑩	고한 역전 2주차장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274-64도 일원	4,053	증)3,790	7,843	정선고 제29호 (02.5.16)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E6	4,053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4,053	주차장 확장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E6	7,843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7,843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4.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고한읍사무소
5.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이상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고한읍사무소로 서면제출
7.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와 고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3-843호

###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이 취약한 산간계곡이나 개울에 서식하는 어족자원의 보호·육성으로 청정지역의 위상을 높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추천 및 위촉장 등(안 제2조)
- 신고(안 제3조)
- 활동경비 지급(안 제4조)
- 담당공무원 지정(안 제5조)
- 보고 등(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농업축산과(우편번호 233-701)

- FAX 제출 : 033-560-2599

- 문의전화 : 033-560-2392

붙임 :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및 위촉장 등)** ① 읍·면장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른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경우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명예감시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호의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고)** 명예감시관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임무수행 중 불법어업 및 내수면자원손상 행위를 적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경비 지급)** 명예감시관 활동경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한 기준 이외의 사항에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담당공무원 지정)** ① 읍·면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도·감독 공무원은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실적을 매월 1회 이상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종합분석·평가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위촉 추천서(제2조 관련)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추천사유

년 월 일

추천자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축 장(제2조 관련)

주소  
성명

귀하를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까지 년간)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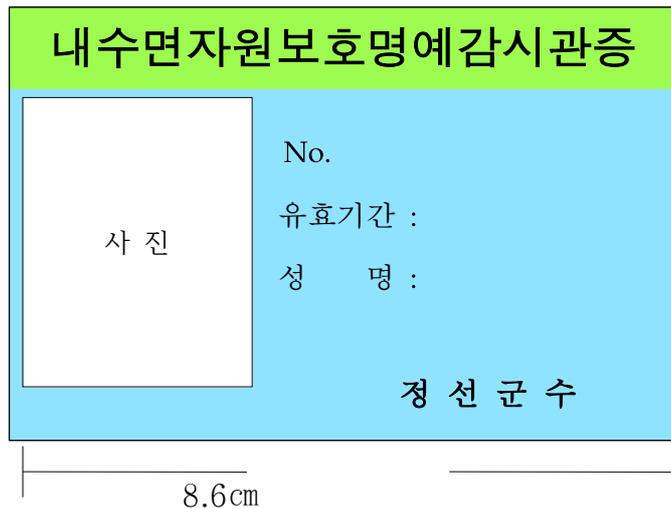
정 선 군 수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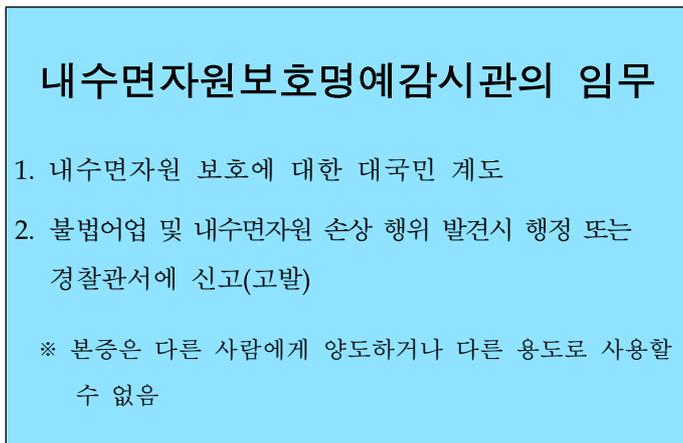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제2조 관련)

전 면



후 면



※ 기본사양

- 재질 : 플라스틱 또는 아크릴
- 규격 : 가로 8.6cm, 세로 5.4cm
- 바탕 : 전면-청색(상단은 연두색), 후면-청색
- 글 : 흑색

\* 색상 및 디자인은 현대감각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4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제2조 관련)

발급번호	발급일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생업)	비고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일지(제5조 관련)

1. 활동실적

활동 기간	년 월 (근무일수: 일)	감시지역		근 무 자 (인)
		활동구간		확 인 자 (인)

구 분		교 육	홍 보	캠페인	여론수렴	신 고	고 발	지도계몽	기 타	계
당월	횟수									
	인원									
누계	횟수									
	인원									

2. 기타 특이사항 등

【별지 제7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실적(제6조 관련)

1. 기 관 명 :

2. 활동현황 :

○       년   월   일 :       명

○       년   월   일 :       명

3. 활동실적

구 분	교 육	홍 보	캠 페 인	여 론 수 렴	신 고	고 발	지 도.계 몽	기 타	계
횟 수									
인 원									

○ 특기사항 :

4. 종합 분석평가

- 
- 
-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조례

제10조(활동경비 및 물품) ①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은 무보수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물품 및 경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경비 지급기준(제10조 관련)

지급대상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수가 위촉한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으로서 1일 3시간 이상 내수면자원보호 활동을 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경비(교통비, 식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500,000원 이내</li> </ul> </li> <li>● 물품(감시활동에 필요한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전등, 망원경, 무전기 등</li> </ul> </li> </ul>

제12조(기타) 군수는 본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세부 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선군공고 제2013 -853호

정선군 계획위원회 위원후보 등록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제57조에 따라 운영중인 정선군 계획위원회 위원후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위원후보 등록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 1. 15일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8일

정 선 군 수

가. 위원회명 : 정선군 계획위원회

나. 위원회 구성계획

- 위원정수 : 25인 (위 축 23인, 관계공무원 2인)
- 임 기 : 2년 (2014. 2. 12. ~ 2016. 2. 11.)

다. 위원 자격요건

-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경관,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군 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자.

라. 위원 선정기준

- 관련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기존위원으로서 심의실적 우수자 우대
- 여성위원으로서 분야별 전문가 및 유사전문가 가능한 적극 위촉
  - \*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목표율 36%범위내 우선 위촉
- 지역 및 직능 단체별 적정안배 (학계, 단체 등)
- 심의빈도에 따른 전문분야별 적정배분 유지

**마. 위원후보 등록요령**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 접수처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도시계획팀)
- 신청서 양식은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 공지사항/군정소식 ⇨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신청서식 및 신청요령 등 게재)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 이메일 : [ks1332@korea.kr](mailto:ks1332@korea.kr)
  - 주 소 : (우)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봉양리 267)
-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이메일(본인확인 필수),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바.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소속(기관)장 추천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사.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아.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 및 등기 또는 이메일 접수의 경우 반드시 신청사실 전화확인
- ※ 정선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33-560-2132, 2431)